

여 96.3.29

정무2실, 행정명령 내릴 수 있는 '여성부'로 가사노동 가치 반영, 복지예산 5%로 확대해야

이미경 /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

김영삼 정부 초기 2년까지의 여성정책은 일선 시장, 구청장, 파출소장 등 과거에는 여성이 전무했던 자리에 여성을 임명한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. 근로여성복지계획 역시 사용주의 시각이 많이 작용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.

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요구해 온 쟁점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렴한 '10대 과제'와 95년 말 이를 제도화한 여성발전기본 법제정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절차 무시, 주무부서 규정이 없는 점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주고 있다.

때문에 기본법의 실효성을 담아내기 위해 여성계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조정업무에 머무는 정무장관(제2)실을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며, 행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'여성

부'로 개편해야 한다. 특히 성차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여성부여야 차별내용을 시정하도록 조정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●여성부의 신설과 지자체의 여성국(과) 신설 ●

정책결정직에의 여성참여 확대 ●임시직, 시간제, 파견제 등 불안정 고용에 대한 방안과 가내노동자보호법 마련 ●여성농민의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 ●의료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재해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주부 가사노동 가

치 반영과 해택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확대 ●산전후 휴가 90일 확대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구체안 마련 ●복지예산 2천년까지 단계적으로 GDP 대비 5%로 확대 ●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 ●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용의 공공성 확보 ●모성보호와 건강권 확보 위한 의료보험 급여 확대 등 최소한의 '여성 행복조건'이 마련해야 한다.